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67

발의연월일: 2023. 2. 2.

발 의 자:최재형・구자근・김성원

김용판 • 노용호 • 박대수

안철수 · 정경희 ·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불법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 그 폐해가막대하여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는 중요함.

현행법에 따르면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에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료물질복합제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제한할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에게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기록의무 등을 부여함으 로써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제2 항제3호).

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3호 중 "원료물질 복합제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하의 원료물질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원료물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① (생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	②
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	
는 제조, 수출입・수수 또는 매	
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	
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ㆍ거	3.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u>
래하는 경우	이하의 원료물질을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